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 기준 등에 관한 공고**

“요양비의 보험급여기준 및 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31호, 2015.12.23.) 제5조의2에 따라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 보험급여 실시를 위한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년 12월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공고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제3호 라목의 규정은 건강보험 인공호흡기 처방전으로 2016년1월1일부터 계약한 건에 적용한다.

1. 서비스 제공명 :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

2. 서비스 목적

인공호흡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호흡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급여를 적용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서비스 내용

가. 서비스 범위

1) “요양비의 보험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31호, 2015.12.23.) (이하 “고시”라 한다) 제5조의2 “인공호흡기 치료”에 의한다.

나. 서비스 절차

1) 인공호흡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가입자 등”이라 한다.)가 처방전을 발급받아 요양비 고시 별표 4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등록된 업소로부터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를 제공(인공호흡기 기기 임차 및 소모품 구입)받는 경우에 요양비를 지급한다.

2) 이 경우,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 제공업소(이하 “업소”라 한다.)와 인공호흡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가입자 등은 요양비 고시 별표 4의3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은 가입자 등이 요양비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9호의3서식 요양비 지급청구서(인공호흡기)와 고시 별지 제2호의2서식 “건강보험 인공호흡기 처방전”, 세금계산서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인공호흡기 처방전(처방을 받은 당월분에 한해 제출) 등 : 처방전, 검사결과지 또는 의사소견서

다. 서비스 기준금액 및 지급기준

1) 요양비 고시 별표6 제2호 마목 및 제3호 바목에 따라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의 기준금액 및 지급기준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가) 기준금액

급여대상 품목 구분		기준금액(원)		
인공호흡기 대여료	혼합형		535,000원/월	
	압력형 또는 볼륨형		356,000원/월	
기본소모품	세트 1		60,000원/월	
	세트 2		80,000원/월	
선택 소모품	기관절개 환자용 커넥터	일반 일체형		7,000원/개
		실리콘 연결형		14,500원/개
	마스크	코마스크 (Nasal, pillow)	실리콘 또는 필로우	125,000원/개
			겔	120,000원/개
		코·입마스크 (Facial)	실리콘	72,000원/개
			겔	148,000원/개

비고: 기본소모품 중 세트 1은 튜브 1개, 필터 4개, 가슴기물통 1개의 세트를 말하며, 세트 2는 튜브 2개, 필터 4개, 가슴기물통 1개의 세트를 말한다.

#### 나) 지급기준

- (1) 기준금액 범위 내 금액으로 구입하거나 대여 받은 경우 : 해당 구입 또는 대여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2) 기준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구입하거나 대여 받은 경우 :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3)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중 선택소모품에 대한 요양비는 기관절개 환자용 커넥터와 마스크 중 하나에 대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받은 선택소모품과 다른 종류의 소모품에 대하여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면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4)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중 선택소모품에 대한 요양비는 그 종류별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지 못한다.
-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본인부담액을 적용받는 사람은 기준금액과 실구입(대여)금액 중 낮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구분		요양비지급금액	본인부담경감자 요양비지급금액
기관절개환자용 커넥터	일반 일체형	12,600원/월	14,000원/월
	실리콘 연결형	26,100원/월	29,000원/월
마스크		360,000/연	400,000원/연

비고 : 마스크는 월1개를 초과할 수 없음.

- (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본인부담액을 적용받는 사람이거나 그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 된 경우에는 그 달의 1일에 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본인부담액 적용 여부를 기준으로 그 달의 요양비를 지급한다.

#### 라. 제공업소 장비기준 및 서비스내용 등

- 1) 제공업소의요양비 고시 별표4의3에서 정한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에 대한 기준 및 서비스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장비 기준

- 인공호흡기는 의료기기품목 허가가 범용인공호흡기(A07010.01) 또는 개인용인공호흡기(A07010.02) 로 허가된 기기이어야 한다.
- 인공호흡기는 경보기능이 있어야 한다(4가지 이상).  
·경보기능 : 볼륨, 압력, 호흡수, 무호흡, 누수, 전원, 튜브분리/막힘 등

##### 나) 서비스 내용

- 업소는 매월 1회 인공호흡기, 소모품 등에 대한 방문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환자관리카드를 업소 및 환자에게 비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 방문하여 인공호흡기의 1회 호흡량, 호흡횟수, 경보기능 작동여부, 환자 사용상태 등을 방문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 및 환자관리카드에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 매월 1회 기본 소모품을 교체하여야 한다.
- 인공호흡기 장비 및 서비스 전반에 대한 업무지침서를 구비하여 환자 및 보호자에게 장비사용법, 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서비스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365일 24시간 콜센터

- 콜센터 등 확실한 대응자가 있고, 관련된 담당자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자동응답시스템 불인정)

나) 성능검사 실시 및 장비 보유 기준

- 성능검사를 위한 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 장비 설치전 반드시 상태, 성능의 기기 검사를 실시하여 정상적인 작동을 확인하여 출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성능 점검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의료용 소독제 및 청소를 위한 콤프레서를 보유하여야 한다.

다) 인공호흡기 보관 장소 기준

- 인공호흡기는 의료용 호흡보조기구로서 성능유지를 위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업소는 별도의 청결한 장소를 확보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라) 기기 소재·이력관리

- 확실한 점검과 이용 불편발생시 신속한 대처 및 정진시의 즉각 대응을 위한 기기 소재·이력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4. 제공업소 등록, 변경, 탈퇴 등

가. 제공업소 등록신청

고시 제5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업소는 별지 제2호 서식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 제공업소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업소는 업소 등록과 함께 별첨1호, 별첨2호, 별첨3호 서식을 기재하여 인공호흡기 기기 및 소모품을 등록하여야 한다.(다량의 자료시 별첨2호, 별첨3호는 엑셀파일도 함께 제출)

나. 제공업소 및 제품 변경신청

고시 제5조의2 제3항에 의하여 등록된 업소의 일반현황, 제품관련(기기등록, 기기삭제, 소모품등록, 소모품삭제) 등의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 제공업소 변경 탈퇴 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 제공업소 탈퇴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 제공업소가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 제공업소 변경 탈퇴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등록취소

공단은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 제공업소로 등록된 업소가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2) 별표 4의3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 제공업소 등록 등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마. 등록증 발급

공단은 등록 신청한 업소가 고시 별표 4의3의 등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 업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5. 사후관리 등

공단은 등록된 업소에 대하여 요양비 고시 별표 4의3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 제공업소 등록 등 기준”에 적합한 서비스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소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또한, 그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조사·점검할 수 있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등록으로 의심되는 경우

나. 제출자료 및 증빙자료의 거짓이나 조작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

다. 공단에 등록된 기기 및 소모품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비 등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마.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정도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바. 기타 부적절한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발생 및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6.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제공

공단은 가입자 등이 효과적인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등록된 업체의 서비스내용과 제품 등에 관한 정보를 공단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다.